

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시민위원회 공개모집 공고

2021년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1년 7월 20일
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

1 개요

-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검사의 공소제기, 불기소 처분, 구속취소,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,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‘검찰시민위원회’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검찰시민위원의 임기는 최장 2년이고(1회 연임 가능)
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.
- 2021. 6. 기존 검찰시민위원들의 임기가 일부 만료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 모집 인원 및 일정

- 모집 인원 : 0명
- 모집 공고 기간 : 2021. 7. 20.(화) ~ 8. 10.(화)
- 향후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, 최종 선정자에 대해서는 개별 유선 통보

3 지원 자격

- 지원 자격: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만 19세 이상(2002. 12. 31. 이전 출생자)의 성남, 하남, 경기 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일반 시민
- 결격 사유: 「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」 제17조,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¹⁾

4 지원 방법 (제출서류)

- 2021. 8. 10.(화)까지 성남지청에 ①이메일 또는 ②등기우편 송부
 - ※ 이메일 또는 우편 송부 후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(연락처: ☎ 031-739-4562)
우편은 마감일 18:00 도착분까지만 접수 인정
 - 우편 주소: (13143)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01호 사건과
 - ※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'검찰시민위원회 지원서 재증' 기재
 - 이메일 주소: proangel@spo.go.kr
 - 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검찰시민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분의 지원서는 모두 폐기할 예정입니다.
- 제출서류
 - 지원서 **【붙임1 양식】** ※서명부분은 반드시 자필기재
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**【붙임2 양식】** ※서명부분은 반드시 자필기재
 - 직업 및 소속(직장, 학교 등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1) 제17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제18조(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대통령
2. 국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
3. 입법부·사법부·행정부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·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
4. 법관·검사
5. 변호사·법무사
6. 법원·검찰 공무원
7. 경찰·교정·보호관찰 공무원
8. 군인·군무원·소방공무원 또는 「예비군법」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